

검 토 보 고 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1과

(2011. 12.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4.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14. 12. 31일 까지 3년을 연장하여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 (1) 안 제14조의 2제1항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2) 안 같은 조제2항에서는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시세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
- (3)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로 이관 개편되면서 본문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제목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을 “감면대상 업무”로 개정

- (4) 안 제16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으로 개정
- (5)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기한에 일몰시기를 3년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도록 함

< 검토의견 >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행정안전부 감면허가제 및 표준조례안 폐지로 모든 자치구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기위한 통일된 조례개정이 필요함으로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 향후 자동이체 세제지원으로 자동이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른 환경적 측면과 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른 인건비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